## 서면결의동의 및 서면결의서

(재)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, 802호(공덕동)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요쿠스의 주주로서 상법 제36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요쿠스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의함을 동의하며, 아래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본 서면결의로써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고자합니다.

- 아 래 -

## 제1호 의안 : 제3자 배정 유상증자

- (1)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상환전환우선주식 1.959 주
- (2)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 510,291원 (액면가 5,000원)
- (3) 배정주식수 및 제 3 배정자: KTBN13호 벤처투자조합 상황전환 우선주식 1,959 주
- (4) 납입기일 : 2018년 1월 31일
- (5) 신주식의 배정방법 : 상법 제 418호 제 2항 및 정관 제 9조 제 2항 제 6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
2018년 1월 31일

주주: (재)서울산업진흥원 (인)

주식회사 요쿠스 귀중